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65
----------	-----

2021. 2. 18.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2. 5. 이향숙 의원 등 7명

나. 상정의결

- 제2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1. 2. 18.)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이향숙 의원)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을 구체화하여 강남구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이의신청 기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조례 인용 사항을 정비함(안 제8조)

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정비함
(안 제20조)

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 사항을 구체화 함(안 별표 1)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상원)

- 본 건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을 구체화하여 강남구 공공 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에 따라 이향숙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임
- 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5호 중 “시설물”을 “공공시설물 등”으로 하는 사항은 현행 조례 제2조(정의)제3호에서 “공공시설물 등”으로 정의 하고 있어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7호의 개정사항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 디자인¹⁾ 도시조성 기본조례」 인용 조항²⁾은 서울시 관련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구 자체 심의에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20조(공공디자인 심의신청)제6항 중 “30일”을 “60”일로 하고, 제7항 중 “15일”을 “10일”로 하는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³⁾에 따르도록 하는 사항임

1)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의 구현을 위한 도시의 조성 또는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2)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제3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대상 5.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 8.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활성화 및 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10.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여자의 선정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안 별표1 제1호주) 및 제3호 각각의 법령 조문 개정은 인용 조문⁴⁾을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별표1 제2호(가로시설물) 중 ‘도로부속시설물’ 가목에는 ‘보안등, 공원등, 경관등’을, ‘문화관광시설’ 다목에는 ‘지역안내표지판’을, ‘환경관리시설’ 가목에는 ‘재활용수거함, 재떨이’를 추가하고, ‘교통관리시설’ 카목에는 ‘횡단보도 쉼터’를 신설하고, ‘그밖에 시설물’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각각 ‘온열의자, 따스함소, 자유형 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추가하였음
또한, 별표1 제4호(기타)에는 ‘기타시설물’로만 분류되어 있던 사항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 조형물 등 미술작품, 벽화, 미디어아트, 특화거리 조성, 빛의 거리 조성’등을 신설하고자 하였음
-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심의대상 공공시설물 등을 보다 구체화, 세분화 하여 구 공공시설물 등에 통일성 및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는 사료되나 각 대상 공공시설물별 신설(추가) 사유 및 필요성 설명은 요구됨. 아울러, 그간 본 조례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심의·자문관련 위원회 구성현황, 운영내용, 실적 등의 설명도 요구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의 : 심의 대상에 공공시설물 항목을 신설한 사유는 무엇인지
- 답 변 : 예를 들면, 초등학교 벽화사업을 할 때 학교 측에서 디자인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심의대상으로 포함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7조(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 제52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

- 질 의 : 그동안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됐던 것 같은데, 조례가 개정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지
- 답 변 : 2020년도에만 총 8회, 25건의 공공디자인을 심의하였고, 금번 개정안이 통과 되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우리 구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조성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질 의 : 강남구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 답 변 : 현재 관련 조례가 없어도 실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조례를 제정한다면 심의 과정에서 일정이 늦어지고 비용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향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5
----------	-----

발의연월일 : 2021. 2. 5.

발 의 자 : 이향숙·이재진·허순임·
김진홍·이재민·이상애·
이도희(이상7인)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을 구체화하여 강남구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이의신청 기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조례 인용 사항을 정비함(안 제8조).

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정비함(안 제20조).

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 사항을 구체화 함(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시설물”을 “공공시설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제20조제6항 본문 중 “3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15일”을 “10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심의대상 시설물”을 “심의대상 공공시설물 등(제8조제5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주)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도로부속시설물의 시설물의종류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경관등

별표 1 제2호 문화관광시설의 시설물의종류란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표석, 지역안내 표

지관

별표 1 제2호 환경관리시설의 시설물의종류란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휴지통, 재활용수거함, 재떨이

별표 1 제2호 교통관련시설의 시설물종류란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횡단보도 쉼터

별표 1 제2호 그 밖에 시설물의 시설물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온열의자 나. 따스소 다. 자유형 표지판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별표 1 제3호 공공건축물의 대상건축물란 나목 중 “시”를 “구”로 하고, 같은 란 라목 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호 주) 중 “설계공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을 “설계공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세부항목	비고
시각상징물	가. 공공시설물 등에 포함되는 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서체, 픽토그램 등 나.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CI, BI, 캐릭터, 서체 등)	
공공미술	가. 조형물, 기념비, 기념탑, 동상 등 미술작품 나. 벽화 다. 미디어아트	
기타	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소방차 등 관용차 나.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마. 특화 거리 조성 사업(테마 디자인 거리 조성, 빛의 거리 조성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 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 거나 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 여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 4. (생략)</p> <p>5. 구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자문대상 <u>시설물</u> (별표 1)의 디자인에 관한 사 항</p> <p>7. 「서울특별시 <u>유니버설디자 인 도시조성 조례</u>」 제13조제 4항 각 호에 따른 유니버설디 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 <u>사항</u></p> <p>8.·9. (생략)</p> <p>제20조(공공디자인 심의신청) ① ~ ⑤ (생략)</p> <p>⑥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 람은 심의·자문 결과를 통보받 은 날부터 <u>30일</u> 이내에 구청장 에게 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p>	<p>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공공시설</u> <u>물 등</u>----- -----</p> <p>7. 「서울특별시 <u>유니버설디자 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u>」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 업에 관한 사항</p> <p>8.·9. (현행과 같음)</p> <p>제20조(공공디자인 심의신청)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 <u>60일</u> ----- -----</p>

수 있다. 다만,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⑦ -----

----- 10일 -----

-----.

신 · 구별표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u>심의대상 시설물</u></p> <p>1. 도시구조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분류</th> <th style="width: 70%;">시설물의 종류</th> <th style="width: 2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도로시설물</td> <td>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 도로</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도로부속시설물</td> <td>가. 보도육교·지하보도(승강기를 포함한다) 나.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 (터널전면부 옹벽시설을 포함한다)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낙석방지망 등</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그 밖에 시설물</td> <td>가. 송전탑 나. 육갑문 다.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td> <td></td> </tr> </tbody> </table> <p>주) 단, 설계공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p> <p>2. 가로시설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분류</th> <th style="width: 70%;">시설물의 종류</th> <th style="width: 2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도로부속시설물</td> <td>가. 가로등 나. 트렌치, 맨홀 다. 제설시설</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문화관광시설</td> <td>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표석</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가로녹지시설</td> <td>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환경관리시설</td> <td>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마. 미세먼지 프리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교통관련시설</td> <td>가. 보행자안내표지 나.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공항</td> <td></td> </tr> </tbody> </table>	분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도로시설물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 도로		도로부속시설물	가. 보도육교·지하보도(승강기를 포함한다) 나.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 (터널전면부 옹벽시설을 포함한다)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낙석방지망 등		그 밖에 시설물	가. 송전탑 나. 육갑문 다.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분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도로부속시설물	가. 가로등 나. 트렌치, 맨홀 다. 제설시설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표석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마. 미세먼지 프리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안내표지 나.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공항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u>심의대상 공공시설물 등(제8조제5호 관련)</u></p> <p>1. 도시구조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분류</th> <th style="width: 70%;">시설물의 종류</th> <th style="width: 2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도로시설물</td> <td>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 도로</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도로부속시설물</td> <td>가. 보도육교·지하보도(승강기를 포함한다) 나.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 (터널전면부 옹벽시설을 포함한다)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낙석방지망 등</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그 밖에 시설물</td> <td>가. 송전탑 나. 육갑문 다.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td> <td></td> </tr> </tbody> </table> <p>주) 단, 설계공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p> <p>2. 가로시설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분류</th> <th style="width: 70%;">시설물의 종류</th> <th style="width: 2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도로부속시설물</td> <td>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경관등 나. 트렌치, 맨홀 다. 제설시설</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문화관광시설</td> <td>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표석, 지역안내 표지판</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가로녹지시설</td> <td>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환경관리시설</td> <td>가. 휴지통, 재활용수거함, 재떨이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마. 미세먼지 프리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교통관련시설</td> <td>가. 보행자안내표지 나.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공항</td> <td></td> </tr> </tbody> </table>	분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도로시설물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 도로		도로부속시설물	가. 보도육교·지하보도(승강기를 포함한다) 나.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 (터널전면부 옹벽시설을 포함한다)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낙석방지망 등		그 밖에 시설물	가. 송전탑 나. 육갑문 다.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분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도로부속시설물	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경관등 나. 트렌치, 맨홀 다. 제설시설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표석, 지역안내 표지판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재활용수거함, 재떨이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마. 미세먼지 프리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안내표지 나.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공항	
분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도로시설물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 도로																																																												
도로부속시설물	가. 보도육교·지하보도(승강기를 포함한다) 나.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 (터널전면부 옹벽시설을 포함한다)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낙석방지망 등																																																												
그 밖에 시설물	가. 송전탑 나. 육갑문 다.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분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도로부속시설물	가. 가로등 나. 트렌치, 맨홀 다. 제설시설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표석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마. 미세먼지 프리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안내표지 나.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공항																																																												
분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도로시설물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 도로																																																												
도로부속시설물	가. 보도육교·지하보도(승강기를 포함한다) 나.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 (터널전면부 옹벽시설을 포함한다)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낙석방지망 등																																																												
그 밖에 시설물	가. 송전탑 나. 육갑문 다.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분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도로부속시설물	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경관등 나. 트렌치, 맨홀 다. 제설시설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표석, 지역안내 표지판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재활용수거함, 재떨이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마. 미세먼지 프리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안내표지 나.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공항																																																												

	버스 승차대 다. 택시 표지판 라. 자전거보관대 마.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바.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사.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아.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자. 교통 감시시설 차. 블라드, 보호펜스 <신 설>	
지하철시설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도로점용허가시설물	가. 분전함(분전함박스를 포함한다), 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 -가로등, CCTV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감지기, 우체통, 소화전, 통신안테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에 시설물	가. 동상 등 미술품 나. 자유형 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공공건축물

분 류	대 상 건 축 물	비고
공공건축물	가. 시 및 자치구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공공청사,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나. 신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등) 라. 그 밖에 <u>시장이</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주) 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건축법 시행령」

	버스 승차대 다. 택시 표지판 라. 자전거보관대 마.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바.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사.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아.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자. 교통 감시시설 차. 블라드, 보호펜스 카. 횡단보도 쉼터	
지하철시설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도로점용허가시설물	가. 분전함(분전함박스를 포함한다), 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 -가로등, CCTV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감지기, 우체통, 소화전, 통신안테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에 시설물	가. 온열의자 나. 파출소 다. 자유형 표지판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공공건축물

분 류	대 상 건 축 물	비고
공공건축물	가. 시 및 자치구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공공청사,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나. <u>구</u>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등) 라. 그 밖에 <u>구청장이</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주) 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과 설계공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27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4. 기타

분류	대상 시설물	비고
기타 시설물	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소방차 등 관용차 나.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제5조의5)과 설계공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52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4. 기타

분류	세부항목	비고
시각상징물	가. 공공시설물 등에 포함되는 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서체, 픽토그램 등 나.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CI, BI, 캐릭터, 서체 등)	
공공미술	가. 조형물, 기념비, 기념탑, 동상 등 미술작품 나. 벽화 다. 미디어아트	
기타	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소방차 등 관용차 나.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마. 특화 거리 조성 사업(테마 디자인 거리 조성, 빛의 거리 조성 등)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